

『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21일

나. 발 의 자 : 장미경, 강승수, 김낙관, 안주찬
양진오, 이선우, 최경동 의원 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5월 10일

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읍·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, 행정정보,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적용범위(안 제3조)
-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(안 제4조)
- 지원기준 및 절차(안 제5~6조)
- 시설 관리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4. 21. ~ 4. 28.) 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조례안은

- 읍·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공지사항, 행정정보,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 방송시스템의 노후, 난청, 울림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